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647호, 2023. 8. 16. 공포,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11. ~ 7.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3조(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u></p> <p><u>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u></p>

체의 장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56